

# 서울관광재단 정관(定款)변경 보고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9월 2일

제출자 :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

## 1. 제안이유

- 가. 「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개정시행에 따른 「서울시 투자·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」 개정사항 반영을 위함(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개정 알림(공기업담당관-8948, 2020.7.22.))
- 나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(2020.6.4. 시행)」의 개정사항 반영을 위함
- 다.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현행 법률 제명 반영을 위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명이 '노동자이사제'에서 '노동이사제'로 변경됨에 따른 노동이사 명칭 변경(안 제8조, 제10조)
  - 노동자이사 → 노동이사로 변경
- 나.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(권한)에 의거,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노동이사의 권한을 명시(안 제13조)
  - 비상근이사(노동이사 포함)는 이사회 안전제출권과 정보열람권을 가진다.

## 「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9조

제9조(권한) ① 노동이사는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. <개정 2019. 3. 28., 2020. 7. 16.>

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시민복리 증진 및 공익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다. 지방출자출연법 제10조(임원의 결격사유 등)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정비(안 제14조)

- 지방출자출연법 제10조를 반영한 임원의 결격사유 개정안

1. 미성년자
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3, 제6호의4,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(신설)
3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(신설)
4.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
5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##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0조

제10조(임원의 결격사유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미성년자

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3, 제6호의4,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3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4.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② (생략)

---

---

**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**

---

---

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 - 6의2.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6의3. 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6의4.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  - 가. 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  - 나. 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--

---

**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**

---

---

제9조(임원) ① ~ ② (생략)

- ③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  1.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
    2.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
    3.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
  - 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, 그 출자·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  - ⑤ (생략)
-

라. 기금 재원과 관련하여 「기부금품모집규제법」의 현행 법률 제명 반영 (안 제33조)

- 기부금품모집규제법 →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

마. 지방출자출연법 제19조(결산)에 따른 결산 완료시점 조정(안 제36조)

-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 → 2개월 이내로 변경

### 3. 참고사항

가. 제안근거 :

- 서울관광재단 정관 제38조(정관의 변경):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

-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개정 알림(공기업담당관-8948, 2020.7.22.)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(2020.6.4. 시행) 제9조, 제10조, 제19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 타 :

- 이사회 승인 및 주무부서(관광체육국) 정관변경허가 후 시행

붙임 : 1. 제안근거 1부

2. 신·구조문대비표 1부

3. 재단법인 서울관광재단 정관(안) 1부. 끝.

※ 작성자 : 서울관광재단 기획예산팀 노준식 팀장 (☎ 3788-8137)

## 붙임#1

### 제안근거 \_ 재단법인 서울관광재단 정관

제38조(정관의 변경)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.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### 제안근거 \_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개정 알림(공기업담당관-8948, 2020.7.22.)

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니다!

I-SEOUL-U **서울특별시** 서울시홈페이지 seoul.go.kr

수신자 수신자 참조  
(경유)  
제목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개정 알림

---


1. 공기업담당관-827(2020.1.16.)호와 관련입니다.

2. 2020년 제3회 서울특별시 조례·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「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 개정조례가 붙임과 같이 ' 20. 7.16.자로 공포·시행되어 「서울시 투자·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보내드립니다.

3. 투자·출연기관에서는 조례 및 세부운영지침 개정사항을 숙지하셔서 임직원 및 이사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반영하여 노동이사의 직무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 \* 법적근거 : 지방공기업법 제56조 제1항 및 제59조 제3항,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 제1항 )

※ 조례 및 세부운영지침 시행일자 : 2020. 7. 16.자

붙임 : 1. 서울시 투자·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1부.  
2.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1부.  
3. 조례 개정 공포안 1부. 끝.

**서울특별시** 

수신자 투자기관 시 주관부서, 출연기관 시 주관부서, 서울시투자기관, 서울시출연기관

---

07/22

주무관 이현봉 공기업총괄팀장 유재우 공기업담당관 김미경

협조자

시행 공기업담당관-8948 (2020-07-22) 접수 기획예산팀-824 (2020.7.23.)  
우 046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(태평로1가) 서울시청 / http://finance.seoul.go.kr/publicoer  
신항사 6층 terpricoe  
전화 (02)2133-8773 전승 (02)2133-0884 / jusanang1@seoul.go.kr / 공개 )

## 제안근거 \_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**제9조(임원)** ① 출자·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(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둔다. 다만,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·출연 기관별 형태,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.

②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(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)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.

③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

2.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

3.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

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, 그 출자·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⑤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출자·출연 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. 이 경우 감사가 출자·출연 기관을 대표한다.

**제10조(임원의 결격사유 등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미성년자

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3, 제6호의4,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3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4.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
**제19조(결산)** 출자·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자산총액, 부채규모, 종업원 수,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·출연 기관은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8조(임원의 구성)</b> ①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</p> <p>1. ~ 2. (생 략)</p> <p>3.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(이사장, 대표이사, <u>노동자이사</u> 1인을 포함한다.)</p> <p>4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	<p><b>제8조(임원의 구성)</b> ①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(이사장, 대표이사, <u>노동이사</u> 1인을 포함한다.)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10조(임원의 임기)</b> ① 이사(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다)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 결과,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<u>노동자이사</u>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노동자 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④ (생 략)</p>	<p><b>제10조(임원의 임기)</b> ① 이사(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다)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 결과,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<u>노동이사</u>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노동자 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13조(임원의 직무)</b> ① ~ ④ (생 략)</p> <p>⑤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. 다만 감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장, 관광산업과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	<p><b>제13조(임원의 직무)</b>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⑤ 비상근이사(노동이사 포함)는 이사회 안건 제출권과 정보열람권을 가진다.</u></p> <p>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</p>
<p><b>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</b>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.</p> <p><u>1. 미성년자 ·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</u></p>	<p><b>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</b>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.</p> <p><u>1. 미성년자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a href="#">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</a></p> <p><a href="#">3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</a></p> <p><a href="#">4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</a></p> <p>5. (생 략)</p> <p><a href="#">6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a></p> <p>② ~ ④ (생 략)</p>	<p><a href="#">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3, 제6호의4,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a></p> <p><a href="#">3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a></p> <p>4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 <p>5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p> <p>6. &lt;삭 제&gt;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33조(기금) ① (생 략)</b></p> <p>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~ 2. (생 략)</p> <p>3. <a href="#">기부금품모집규제법</a> 제5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출연금, 기부금 등</p> <p>4. (생 략)</p> <p>③ ~ ⑤ (생 략)</p>	<p><b>제33조(기금) ①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a href="#">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</a> 제5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출연금, 기부금 등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36조(결산) ①</b>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<a href="#">3개월</a>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③ (생 략)</p>	<p><b>제36조(결산) ①</b>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<a href="#">2개월</a>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


# 재단법인 서울관광재단 정관

제정 2018. 4. 23.  
개정 2019. 4. 9.  
개정 2019. 11. 12.  
개정 2020. 4. 29.  
개정 2020. 8. 3.  
개정 2020. 0. 00.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법인은 「민법」과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지방출자출연법”이라 한다) 및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이하“조례”라 한다)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의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9.4.9.>

**제2조(명칭)** 이 법인은 재단법인 서울관광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**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**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 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.

**제4조(사업의 범위)**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
1.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
2. 국내·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
3. 기업회의, 인센티브관광, 국제회의, 전시회 등 육성 지원
4.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
5.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
6. 관광시장 조사·연구·컨설팅 및 정보 제공
7. 국내·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협력 지원
8.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
9. 관광기업 육성 및 지원
10.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
1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
12.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과 관련되는 업무

**제5조(수익사업)**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**제6조(대행사업)** ① 재단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.

- ② 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.

**제7조(공고방법)** 재단이 공고·고시할 사항은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.

## 제 2 장 임 원 및 직 원

**제8조(임원의 구성)** ①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1. 이사장 1인
2. 대표이사 1인
3.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(이사장, 대표이사, **노동이사** 1인을 포함한다.) <개정 2019.11.12., 2020.0.00.>
4. 감사 2인 이내

② 이사는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당연직 이사와 법인의 사업과 연관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명하는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.

**제9조(임원의 임명)** 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, 이사장·대표이사 및 선임직 이사·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.

② 시장은 경영성과에 따라 대표이사를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다.

③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.

1.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장
2.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

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

**제10조(임원의 임기)** ① 이사(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다)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 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 결과,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**노동이사**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노동자 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4.9., 2019.11.12., 2020.0.00.>

② 제1항에 의해 임원을 연임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비상근이사 및 감사를 연임시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③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완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.

④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.

**제11조(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)**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(이하, "추천위원회"라 한다)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.

1. 서울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
2.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
3.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 (단, 재단을 설립하는 때에는 서울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.)

② 서울시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사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

1. 관광, MICE 관련분야 전문가
2. 경영전문가
3.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

4. 공인회계사, 변리사, 변호사 등 전문가
5. 기타 재단의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
- ④ 기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재단의 내규로 정한다.

**제12조(임원 후보자의 추천절차)** ① 추천위원회가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 결원 직위에 대하여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.

② 임명권자는 추천된 임원 후보자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재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 후보자를 재추천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임원의 직무)**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장, 이사회에서 정하는 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.
- ⑤ 비상근이사(노동이사 포함)는 이사회 안건제출권과 정보열람권을 가진다. <신설 2020.0.00.>
- ⑥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. 다만 감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장, 관광산업과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9.4.9.>

**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<개정 2020.0.00.>

1. 미성년자
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3, 제6호의4,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3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
5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6. 삭제 <2020.0.00.>

② 재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

④ 시장은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.

1. 관계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때
2.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때
3.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때

**제15조(직원의 임면)** ① 재단의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한다.

②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총원이 곤란한 직위

·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.

③ 직원의 임면, 승진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16조(임직원의 복무)** 임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17조(임직원의 겸직제한)** 재단의 대표이사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대표이사는 시장의, 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
**제18조(임직원의 보수)** ① 재단의 대표이사 및 직원의 보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② 비상근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9조(비밀누설의 금지 등)** 재단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20조(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)** 재단의 이익과 대표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지 못한다.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.

**제21조(대리인의 선임)** 대표이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
## 제 3 장 조 직 과 정 원

**제22조(조직 및 정원)** ① 재단의 조직은 별표 1,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,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
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달성하기 위하여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 이때 파견된 인원은 별표 2의 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## 제 4 장 이 사 회

**제23조(설치 및 구성)**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**제24조(의결사항)**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1. 재단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3.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5. 조직,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
6.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
7.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
8.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

- 9. 법령, 조례,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10. 기타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

**제25조(이사회회의 소집)**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.

-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소집한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장이 소집한다.
- 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.
- ⑤ 이사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.

**제26조(의결방법)**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.
- ④ 이사장은 제3항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을 제25조의 절차에 따라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27조(이사회 참여제한)** 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- 1.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-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, 계약의 체결 등과 관련하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**제28조(의사록)** 이사장은 이사회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와 감사의 기명·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.

## 제 5 장 위 원 회

**제29조(설치)**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**제30조(운영)**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## 제 6 장 재 산 과 회 계

**제31조(재산)**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-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재산
  - 2. 설립 후 정부, 지방자치단체, 기타 법인 및 개인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출연한 금원, 유가증권, 동산 및 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
  - 3. 서울특별시 및 정부의 보조금과 결산된 잉여금 중 이사회가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
  - 4. 기금으로 적립한 금원
-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시의 출연금,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, 위탁사업수입금, 법인 사업수입금, 지정기부금, 기타수입금 등으로 구성하고,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에서

충당하며, 기부금에 대하여는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.

**제32조(재산의 관리)** ① 재단의 대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단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4.9.>

② 재단이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교환,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9.4.9.>

**제33조(기금)**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<개정 2020.0.00.>

1.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출연금
2. 중앙정부 지원금
3.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출연금, 기부금 등
4.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 및 재단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③ 재단은 기금의 원금을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④ 재단은 기금의 운영·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⑤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한다.

**제34조(사업연도)**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.

**제35조(사업계획과 예산)**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36조(결산)**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0.00.>

② 결산보고서에는 업무현황,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37조(손익금의 처리)** ① 재단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월 또는 유보한다.

②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,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한다.

③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따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준비금으로 이를 보전하고, 부족할 때에는 이월한다.

## 제 7 장 보 칙

**제38조(정관의 변경)**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.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**제39조(해산)**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**제40조(잔여재산의 귀속)**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, 시장의 승인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거쳐 서울특별시 또는 목적이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.

**제41조(시행규정)**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사업연도)**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당해 연도말까지로 한다.

**제3조(사업계획 등)**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재단의 설립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4조(조례 또는 직제 개·폐 등에 의한 적용)** 제9조의 당연직 이사와 제13조의 직무대행자는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직제의 개·폐 등으로 변경된 경우, 그 직명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**제5조(영업양수도 계약에 관한 특례)** ① 재단은 재단설립 당시 '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'에 따라 설립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와 업무에 관한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.

② 재단은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업무가 종료되는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종사하는 직원을 고용승계한다.

③ 전항에 따른 고용승계를 희망하지 않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노동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1.12.>

## 부 칙 <2019. 4. 9.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정관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 <2019. 11. 12.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정관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 <2020. 4. 29.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정관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**부 칙 <2020. 8. 3.>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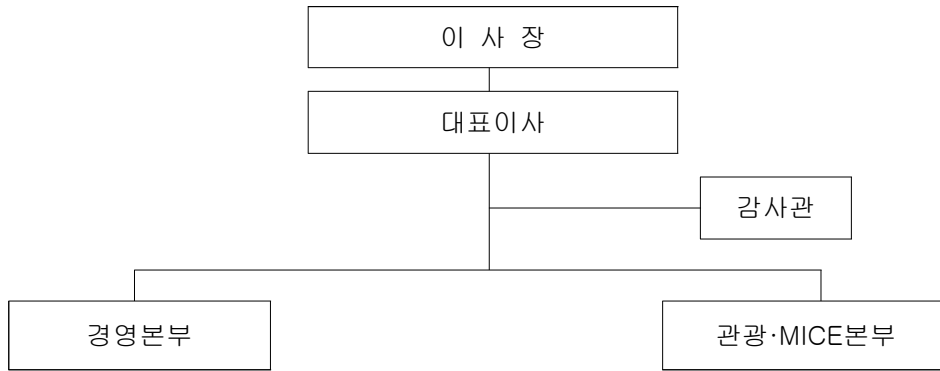
**제1조(시행일)** 이 정관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**부 칙 <2020. 0. 00.>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정관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

[별표 1] 조직도 : 2본부 <개정 2019.4.9.>



[별표 2] 정원표 <개정 2020.8.3.>

(단위: 명)

임원	일반직					전문직	합계
	1급	2급	3~4급	5~6급	소계		
1	6	14	37	49	106	52	159

[별표 3] 기본재산 목록 <신설 2020.4.29.>

(단위 : 원)

구분	출연자	금액	비고
계		1,000,000	
현금	서울특별시	1,000,000	설립출연
	서울특별시		추가출연
	서울관광재단		잉여금